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963
----------	-------

발의연월일 : 2022. 3. 25.

발 의 자 : 김기현 의원

찬 성 자 : 강기윤 · 강대식 · 강민국
구자근 · 권명호 · 권성동
권영세 · 김도읍 · 김미애
金炳旭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김 웅 · 김은혜 · 김정재
김태호 · 김태흠 · 김학용
김형동 · 김희곤 · 김희국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박덕흠 · 박성민 · 박성중
박수영 · 박완수 · 박 진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안병길 · 양금희 · 엄태영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윤두현 · 윤상현 · 윤영석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윤한홍 · 이달곤 · 이만희
이명수 · 이양수 · 이 영

이 용 · 이용호 · 이종배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이철규 · 이현승 · 임이자
장제원 · 전봉민 · 전주혜
정경희 · 정동만 · 정우택
정운천 · 정점식 · 정진석
정찬민 · 정희용 · 조경태
조명희 · 조수진 · 조은희
조태용 · 조해진 · 주호영
지성호 · 최승재 · 최재형
최춘식 · 최형두 · 추경호
태영호 · 하영제 · 하태경
한기호 · 한무경 · 허은아
홍문표 · 홍석준 ·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109인)

주 문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선거이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그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어야 그 운영

에 있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

그러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조에 따라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한 선거 관리와 미흡한 대처로 큰 혼란을 초래하였음.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관위의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행정편의에 따라 헌법이 정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중앙선관위에 부여된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가 공정하고 평온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기능이 왜곡되어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위임.

무엇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단은 건의문을 통해 이번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하여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책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표명을 요구함.

이에 노정희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선거 관리가 요구되는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사무관계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접·비밀 선거 원칙 위반임.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지 아니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담긴 봉투가 전달되어 오랜 시간 대기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함. 중앙선관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투표용지를 타인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 지침 자체가 반헌법적 발상이자, 위법한 행위임.

둘째, 「공직선거법」 제151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선거에 투표 구마다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표함이 여러 개일 경우, 관리가 어렵고,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당시, ‘임시투표함’을 마련했으나, 종이박스, 쇼핑백, 심지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까지 동원되는 등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함은 물론, 현장에서 벌어지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남발하여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보고 체계 부실의 행정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냄.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는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 신뢰마저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함.

셋째,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참여 시 혼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이 뒤섞이는 등 유권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함.

특히 이러한 사전투표 과정의 대혼란속에서도 노정희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며,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고, 선거 관리 총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114조제1항, 「공직선거법」 제1조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임.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단은 각각 성명서와 건의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하고 일신하여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과오와 실책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과 행동을 촉구하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와 거취표명을 요구함.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취임 이후, 중앙선관위는 현수막 문구 등의 자의적 해석 논란 등 끊임없는 공정 선거 시비에 휘말려왔고,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른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관리로 인해 ‘소쿠리 선거’라는 오명을 떠안음.

결국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국민주권의 핵심인 선거 관리 기관의 수장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 등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투표의 원칙과 법률에 명시된 엄중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실패하여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따라서 다가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선거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중앙선관위의 신뢰 회복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